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 년 12 월 31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영문명)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shbnppam.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8, 19층  
(전 화) 02-767-5777

대 표 이 사 : 조용병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철우 (전 화) 02-767-9031

작 성 자 : (직 책) 사원  
(성 명) 황미이 (전 화) 02-767-5794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8호)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이 〇 〇 외 1인
3. 청구내용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상고)
4. 관할법원	대법원
5. 향후대책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임
6. 제기·신청일자	2013. 12. 12
7. 확인일자	2013. 12. 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상관 없음

(제6-8호)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배 〇 〇 외 8인
3. 청구내용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상고)
4. 관할법원	대법원
5. 향후대책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임
6. 제기·신청일자	2013. 12. 30
7. 확인일자	2013. 12. 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상관 없음